사상가 별 중요 제시문 모음-국가와 시민의 윤리

아리스토텔레스

모든 국가는 하나의 생활 공동체이며, 모든 공동체는 어떤 선(善)한 목적을 이루기 위해 형성된다.…(중략)…모든 공동체 중에 가장 으뜸가며 다른 공동체 모두를 포괄하는 특정한 공동체가 있다면, 이는 가장 으뜸가는 좋은 목적을 추구한 것이다. 이 가장 포괄적이며 가장 주요한 공동체가 바로 국가, 즉 정치적 공동체이다. (수특 89p)

국가는 자연적으로 존재하는 공동체들의 완성이므로 모든 국가는 자연적으로 존재하며, 이런 면에서 국가 성립 이전의 단계인 여러 공동체와 마찬가지 성격을 갖는다. 국가는 이런 여러 공동체의 종착역이며 가장 높은 단계이다. (수특 89p)

홉스

천성적으로 자유를 사랑하고 타인을 지배하기를 좋아하는 인간이 코먼웰스(국가) 속에서 구속을 스스로 부과하는 궁극적 원인과 목적과 의도는 자기 보존과 그로 인한 만족된 삶에 대한 통찰에 있다.…(중략)…코먼웰스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다수 사람들이 상호 신의 계약을 체결하여 세운 하나의 인격으로서, 그들 각자가 그 인격이 한 행위의 본인이 됨으로써, 그들의 평화와 공동 방위를 위해 모든 사람의 힘과 수단을 그가 임의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수특 91p)

자연 상태는 '만인의 만인에 대한 투쟁'의 상태이다. 내가 나 스스로를 통치하는 권리를 누군가에게 양도하는 것은 너도 너의 권리를 그에게 양도하고 그의 모든 활동을 나와 마찬가지로 승인하는 것이다. 이렇게 나의 권리를 양도하는 목적은 자신의 안전 보장과 생명 보존에 있다. 따라서 설령 한 인간이 말 또는 기타 표시에 의해서 이 목적을 포기하는 것을 의도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경우가 있더라도, 그것이 그의 의지나 의도였다고 해석해서는 안 된다. (수특 94p)

나라를 다스리는 자는 자연인보다 비교할 수 없이 크고 강해야 하며 자연인을 보호하고 방위해 주는 것이 그의 목적이다. 자연 상태에서 인간은 전쟁 상태에 놓여 있는 것과 같으므로, 사람들은 자신을 방어하기 위해 힘과 권력을 한 인간 또는 한 합의체에 부여한다. 이렇게 자신의 권리를 양도하는 목적은 자신의 안전 보장과 생명 보존에 있으므로 통치자는 이러한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해 주어야 한다. (수특 99p)

로크

국가는 그 사회의 구성원들 사이에서 저질러진, 의당 처벌되어야 한다고 생각되는 이러저러한 범죄에 어떤 처벌을 가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권력을 가지게 된다. 더불어 국가는 국가의 외부인이 그 구성원에게 가한 침해를 처벌할 수 있는 권력도 가지고 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은 가능한 한 사회의 전 구성원의 재산을 보존하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시민 사회에 가입하여 어떤 국가의 구성원이 된 사람은 모두 자신의 사적인 판단에 따라 자연법의 위반 행위를 처벌할 수 있는 권력을 포기한 것이다. (수특 91p)

인간이 자연적 자유를 포기하고 국가의 구속을 받게 되는 유일한 길은 공동 사회 구성에 동의하는 것이다. 그럼으로써 다수의 결정에 구속되어야 한다는 의무를 짊어지게 된다. 그러나 국가가 시민의 재산을 보호하지 못할 경우 시민은 동의를 철회할 수 있다. (수특 94p)

국가는 사람들 간의 합의하여 만든 공동체이다. 본래 인간은 모두 자유롭고 평등하고 독립된 존재이므로, 어떤 인간도 자신의 동의 없이 이러한 상태를 떠나서 다른 사람의 정치 권력에 복종할 수 없다. 재산을 안전하게 향유하고 안전을 확보하며 평화로운 삶을 영위하기 위해 시민 사회의 구속을 받아들이는 것이다. (수특 96p)

인민의 재산을 빼앗거나 파괴하고자 기도할 경우 또는 인민을 자의적 권력하에 놓인 노예로 만들고자 할 경우, 인민은 그로 인해 더 이상의 복종 의무로부터 면제된다. 인간이 사회에 들어가는 이유는 그들의 자연권을 보장받기 위해서이므로 그러한 신탁 조건을 어긴 위정자에 대해 저항할 수 있다. (수특 98p)

싱어

시민 불복종은 합법적인 수단이 실패했을 때 사용될 수 있는 적합한 수단이다. 법의 힘에 저항하지 않고 비폭력으로 행위 하면서, 그들의 행위에 대한 법적인 처벌을 받아들임으로써, 시민 불복종자들은 자신들의 항의의 진지성과 법의 지배 및 민주주의 기본 원칙들에 대한 자신들의 존중을 표명하게 된다. (수특 93p)

결심을 함에 있어서 우리는 중단시키려고 하는 악의 크기와 우리의 행위가 가져올 법과 민주주의에 대한 존중의 심각한 감소 가능성을 저울질해 봐야 한다. 우리는 또 우리의 행위가 목표 달성에 실패하여 반작용을 불러일으킴으로써 다른 수단으로 성공할 가능성을 감소시킬 가능성도 고려해 봐야 한다. (수특 93p)

시민 불복종은 정부의 정책이나 법이 진실로 다수의 의견을 반영하고 있지 않거나, 다수의 입장이라 하더라도 그 내용이 완전히 그릇된 것일 때 가능하다. 불복종이 언제 정당화될 수 있고 언제 그렇지 않은지 단언할 수 있게 해 주는 그런 간단한 규칙은 없다. 다만 시민 불복종이 사회 전체에 가져올 손익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수특 99p)

롤스

시민 불복종은 정부의 정책이나 법이 진실로 다수의 의견을 반영하고 있지 않거나, 다수의 입장이라 하더라도 그 내용이 완전히 그릇된 것일 때 가능하다. 다만 우리가 중단시키려는 악의 크기와 우리의 행위가 가져올 법과 민주주의에 대한 존중의 심각한 감소 가능성을 저울질해 봐야 한다. 또한 우리의 행위가 목표 달성에 실패하여 불러일으킬 수 있는 반작용에 대해서도 고려해 보아야 한다. (수특 95p)

우리는 법이나 정부의 정책에 변혁을 가져올 목적으로 정치적 행위를 한다. 이러한 행위를 통해 공동 사회의 다수자가 갖는 정의감을 나타내게 되고, 자유롭고 평등한 사람들 사이에서 사회 협동체의 원칙이 존중되지 않고 있음을 선언하는 것이다. (수특 95p)

정의의 원칙에 대한 심각한 위반이나 정치적 다수자에게 정상적인 호소를 성실하게 해왔지만 그것이 성공하지 못하는 경우에 시민 불복종을 생각해 볼 수 있다. 또한 평등한 자유의 원칙이나 공정한 기회균등의 원칙에 대한 위배, 합법적인 수단이 소용없을 때에는 정당하게 시민 불복종에 참여할 수 있다. (수특 97p)

시민 불복종은 그것이 비록 법의 바깥 경계선에 있는 것이기는 하지만 법에 대한 충실성의 한계 내에서 법에 대한 불복종을 나타내고 있다. 법을 어기기는 하지만 법에 대한 충실성은 그 행위의 공공적이고 비폭력적인 성격과 그 행위의 법적인 결과들을 받아들이겠다는 의지에 의해 표현된다. (수특 99p)

거의 정의로운 사회에서 구성원에게 요구되는 자연적 의무는 체제의 안정성에 기여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구성원들은 체제의 불가피한 결함을 똑같이 분담해야 한다. 물론 사회의 부정의가 구성원에게 주는 부담이 과도해서는 안 된다. (2020 수능 18번)

시민 불복종은 법이나 정부의 정책에 변혁을 가져올 목적으로 행해지는, 공공적이고 비폭력적이며 양심적이기는 하지만 법에 반하는 정치적 행위이다. 시민 불복종은 거의 정의로운 국가 내에서 그 체제의 합법성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시민들에게만 생겨나는 문제이다. 시민 불복종 행위가 그 권리를 인정받으려면 대상과 수단이 적절해야 한다. (2020 6평 12번)

사회의 기본 구조가 합당하게 정의로운 것인 경우, 그 부정의가 지나치지만 않으면 부정의한 법도 구속력이 있음을 인정해야 한다. 시민 불복종은 법에 대한 충실성의 한계 내에서 법에 대한 불복종을 나타내는 것이어야 한다. (2019 6평 16번)

거의 정의로운 사회는 심각한 부정의가 존재할지도 모르지만 일종의 민주적 정부의 형태를 갖춘 사회이다. 이러한 사회에서 정의의 원칙들은 자유롭고 평등한 인간들 간의 자발적인 협동의 기본 조항으로서 공공적으로 인정된다. 그래서 시민 불복종에 참여함으로써 사람들이 의도하는 것은 다수의 정의감에 호소하여 자유로운 협동의 조건이 침해되었다는

것을 정당하게 알리는 것이다. (2019 수능 18번)

정의의 원칙을 완전히 보장해 줄 완전한 헌법을 제정하기는 어려우며 그 절차도 찾기 어렵다. 또한 헌법에 따라 제정된 법이 정의로운 것이기를 보장해 줄 완벽한 절차도 존재하지 않는다. 이러한 한계로 인해 헌법이 정의로우며 그로부터 이익을 받고 또 받을 예정이라면, 우리는 다수자가 제정한 법이 부정의하다 할지라도 그에 따라야 할 의무를 갖는다. 하지만 대체로 질서 정연한 사회 안에서, 정의의 원칙에 어긋나는 법이 심각한 정도로 부정의할 경우, 우리는 시민 불복종을 고려하게 된다. (2019 9평 19번)

소로

우리는 먼저 인간이어야 하고, 그 다음에 국민이어야 한다고 나는 생각한다. 법에 대한 존경심보다는 먼저 정의에 대한 존경심을 기르는 것이 바람직하다. 내가 떠맡을 권리가 있는 유일한 의무는 어느 때든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바를 행하는 것이다. (수특 95p)

정의롭지 못한 법이 존재한다고 하자. 그 법을 준수하는 데 만족할 것인가, 아니면 법을 개정하려고 노력하면서 개정에 성공할 때까지는 준수할 것인가, 아니면 당장에라도 그 법을 위반할 것인가? 나는 서슴없이 말한다. 정부의 잘못된 정책에 대해서는 지금 당장 거부해야 하며, 한 표 앞선 다수가 될 때까지 기다리는 대신 자신들을 통해 정의가 승리하도록 해야 한다. (수특 97p)